



제42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재해영향평가법안

검 토 보 고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08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1
2. 주요내용	2
III . 제정안의 구성체계	5
IV .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8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8
2. 입법 필요성 검토	10

V. 주요 내용별 검토	13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13
2.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안 제9조 및 제10조)	23
3.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27
4.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안 제22조부터 제37조까지)	34
5.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45
6. 보칙 및 벌칙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49
7. 부칙	5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0.
3. 회부연월일 : 2024.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기 전에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로 피해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 및 저감방안 등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자연재해 전반을 다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11개 조항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증가하고 개발사업으로 불투수층 및 인공사면이 확대됨에 따라 도심지 등에서 인명피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준공 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나 법률의 부재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재해영향평가서의 심의기능의 전문성 확보와 제도의 고도화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맞추어 별도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재해영향평가제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은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하며,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관계기관 및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4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1조.)

라. 행정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정 요청 또는 반려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았을 때에 그 내용을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 현장에 비치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재해영향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재해영향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영향저감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

차.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사 등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40조까지).

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 운영시스

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타.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Ⅲ.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정안의 법률 제명(題名)은 「재해영향평가법안」으로, 총 5개의 장, 49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 체계]

제명: 재해영향평가법안		
장	절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본원칙
		제5조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제6조 재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7조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제8조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등	제1절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	제9조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 의견수렴
	제2절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등	제11조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제12조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13조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14조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제15조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6조 협의 내용의 통보
		제17조 협의 내용의 반영

제명: 재해영향평가법안		
장	절	조문
		제18조 협의 내용의 조정
		제19조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제20조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특례
		제21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3절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22조 협의 내용의 이행
		제23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4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25조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제26조 협의 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제27조 협의 이행실태 점검
		제28조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29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 및 공사의 금지
		제30조 협의 이행 결과의 제출 등
		제31조 사후관리
		제32조 재해영향평가의 업무 대행 등
		제33조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제34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35조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실태 점검
		제36조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자연재해대책법」의 준용
제3장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	제38조 재해영향평가사
		제39조 재해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제40조 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제명: 재해영향평가법안		
장	절	조문
제4장 보칙	-	제41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제42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43조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4조 재해영향평가협회
		제4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IV. 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입법 필요성 검토

1. 제정안의 발의 배경

최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그 유형 및 대상 사업이 갈수록 복잡화·다양화하는 등 개발 환경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해당 개발계획·사업에 대한 사전적 재해영향성검토 및 평가와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사업이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피해유발 요인들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책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가 1996년 6월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재해 원인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방재성능 평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침수흔적도 작성 등 풍수해 관련 제도, 기타 가뭄·폭염·한파 등의 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등 자연재해 전반과 관련된 다른 내용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은 10여개 조문에 불과하여 연간 3,700여 건에 이르는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제도의 실효적인 정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재해영향평가 협의 현황을 보면 2017년, 2018년 2020년에는 연 4,000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약 3,500 ~ 3,700건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해영향평가 연도별 협의 현황]

구분		계(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재해 평가	합계	64,116	28,980	3,006	3,531	4,191	4,847	3,505	4,799	3,862	3,775	3,620
	중앙	2,245	855	137	181	225	172	117	142	144	154	118
	지방	61,871	2,812	2,869	3,350	3,966	4,675	3,388	4,657	3,718	3,621	3,502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최근 5년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협의 내용의 이행이 미흡한 사례가 2021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매년 약 500여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점검 결과]

구분	사업 장수	소계	행정관리 미흡			현장관리 미흡					
			관리대장 미작성 등	착공 미통보 등	재협의, 변경이행계획서 미작성 등	실시 설계 미반영	임시 침사지 미설치 등	가 배수로 규모조정 등	영구 저류지 규모조정 등	사면보호 공법 미적용 등	기타
합계	588	2,223	261 (11.7%)	188 (8.5%)	141 (6.3%)	156 (7.1%)	425 (19.1%)	250 (11.2%)	114 (5.1%)	423 (19.1%)	265 (11.9%)
'24	111	471	50	46	35	37	98	11	19	107	68
'23	142	515	53	77	30	31	91	64	19	93	57
'22	130	469	47	22	28	24	100	93	27	78	50
'21	146	563	88	25	35	46	109	62	29	105	64
'20	59	205	23	18	13	18	27	20	20	40	26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제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으로부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를 분리하여 사전검토, 협의·재협의·변경 협의, 협의 결과의 통보,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에 이르는 절차를 세분화·구체화하고, 재해영향평가협회 설치, 재해영향평가기술자 육성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입법 필요성 검토

제정안은 기존의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접근성 및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주요 차이를 살펴보면, 기존 용어의 변경(재해영향성검토 →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회 신설, 재해영향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 계획 등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의무화,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의 신설,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재해영향평가협회 신설 등이 있는바, 이는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정안의 입법 필요성 및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 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복구 등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과 같이 자연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사항 중 재해영향 평가와 관련한 사항만을 새로 법률로 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할 경우 재해영향평가 결과와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계획 등과의 연계성이 약해질 우려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다른 법률의 개정방식을 통해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중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이행, 관리·감독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 종료 전 개발사업 허가 금지, 방재 분야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 체계 이원화로 인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거나 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셋째, 기존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 작성 업무를 포함하여 방재관리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정안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방재관리 및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도로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게 되므로, 기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이중 등록으로 인한 행정부담이 증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입법 형식과 관련하여서는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취지와 현행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한 법 적용상의 혼란 발생 가능성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입법 방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장별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내용과 제정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차이점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V. 주요 내용별 검토

1. 총칙(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측·평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2. “재해영향”이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홍수유출량의 증가, 토사유출량의 증가, 사면의 불안정 등 재해를 유발하여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지(이하 “사업대상지”라 한다)와 주변지역에 직접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3.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란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행정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 및 재해영향 발생 감소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고, 재해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재해영향평가”란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6. “재해영향저감대책”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대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책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행정계획의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한다.

8. “재해영향평가대행자”란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재해영향평가사”란 재해 현황 조사, 재해영향 예측·분석, 재해영향 제거 또는 감소 대책 및 대안의 평가 등을 통하여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10. “재해영향평가대상지역”이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재해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객관성, 과학성,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의 평가지침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등을 마련·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본원칙)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은 해당 개발사업등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2. 재해영향저감대책은 과학적·논리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영향평가 과정에 관계기관, 주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재해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5.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등이 특정 지역 및 시기에 집중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누적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①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재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①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재해유형별 재해 위험요인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재해영향평가협의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사항

2.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재해영향 평가 분야 및 방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설립·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를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총칙에 목적, 정의, 국가 등의 책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본원칙,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재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

가방법, 재해영향평가협의회,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해영향평가와 유사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과 「환경영향평가법」의 총칙 비교]

제정안	조문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	목적	제1조
제2조	정의	제2조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
제4조	평가 기본원칙	제4조
-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 등)	제5조
제5조	평가 대상지역	제6조
제6조	평가 분야 및 평가항목	제7조
제7조	영향평가협의회	제8조
제8조	전문기관의 설립·운영	-

첫째, 제정안은 제2조(정의)에서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 행정계획에 대한 예측·분석 및 대책 마련을 “재해영향성검토”로,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분석 및 대책 마련을 “재해영향평가”로 정의하던 것에서 명칭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기존의 정의에 따르면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과 관련한 것에 한정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해영향평가”를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측·평가하는 제도의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용어 사용 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제정안의 입법 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둘째, 제정안 제7조는 재해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협의 사항, 협의 내용의 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를 신설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안 제21조에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 이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서부터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서 제정안이 신설하려는 “재해영향평가협의회”와 구성 등이 유사하여 그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¹⁾하도록 하고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수자원,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산림, 도로 및 교통, 도시계획, 해안항만 등 분야(이하 이 조에서 “해당분야”라 한다)에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있고, 제정안의 “재해영향평가협의회”는 재해영향 평가 분야 및 방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이 구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심의하게 하는 것은 행정 절차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제도 운영상의 중복 및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재해영향평가협의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규정하기보다는 하나의 기구에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도 기능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회의 기능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세부 기능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두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별도의 심의위원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마. 방재 관련 업무를 총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의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²⁾).

셋째, 제정안 제8조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재해영향저감대책업무의 전문성 확보,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조사,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전문기관의 설립 여부 및 방식과 관련하여서는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함께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먼저, 전문기관의 설립 여부와 관련하여, ① 기획재정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이미 재난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³⁾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조직의 활용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②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관련 기술개발, R&D 기획·관리 등으로 재해영향평가 제도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후관리, 시스템관리 등 재해영향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2)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7조(직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이 장에서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난·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음으로, 전문기관의 설립 방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립한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할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직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관 설립의 유연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설립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① 「환경영향평가법」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해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그 밖에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⁴⁾를 두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한 대표적인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⁵⁾은 환경부 산하

4) 「환경영향평가법」 제68조(전문기관 등의 수행사항) 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각종 지표(指標)의 개발·작성·보완
2.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개발
3. 제70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감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4. 기후변화·대기환경·대기배출원 관리 등 기후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물환경공학 및 수질환경·수질통합관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폐기물의 처리·자원화 및 자연생태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7. 생활환경·먹는물·토양지하수·환경측정 분석 등 환경기반 분야 관련 연구
8.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 및 저공해엔진 인증에 관한 조사·연구

소속기관으로, 한국환경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⁶⁾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②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은 이행명령 및 공사 중지 명령의 대상(안 제28조)이 되고,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금지(안 제29조)하는 등 재해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해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 또는 부속기관으로 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9.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별표 1 중 19. 한국환경연구원)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 제2조 : 정의	제1조 : 목적(신설)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관한 내용 규정
-	제2조 : 정의(신설+수정)	▸ 기존 용어 변경 및 일부 용어 정의 신설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신설)	▸ 국가 및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의무 명시
-	제4조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기본원칙(신설)	▸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원칙 제시
-	제5조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신설)	▸ 저감대책·방안 필요지역 및 검토대상 설정 명시
-	제6조 : 재해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신설)	▸ 재해영향평가등의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제시
-	제7조 : 재해영향평가협의회(신설)	▸ 협의회 역할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제8조 : 전문기관의 설립·운영(신설)	▸ 재해영향평가 관련* 전문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 평가관련 심의, 조사, 연구·개발 및 재해영향저감대책 전문성 확보 등

2.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안 제9조 및 10조)

제 정 안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절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
제9조(재해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사업 3. 그 밖에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견 수렴)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지 주민 등에게 개발사업등의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업대상지와 연관되는 유

역 내 하천의 범람, 내수 침수, 토석류 등의 과거 피해이력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이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이하 “방재시설”이라 한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이전에 해당 방재시설의 사용·소유·점유·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를 재해영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 및 권리자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주민 및 권리자가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정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에 관한 규정⁷⁾과 같은 내용으로 재해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외 대상에 대하여 명시(안 제9조)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등의 내용을 알리고 과거 피해이력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인접한 방재시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재해영향평가서에 첨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안 제 10조)하려는 것입니다.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제정안은 ‘사업대상지와 연관되는 유역’ 또는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방재시설’ 등의 범위에 관하여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은데, 해당 조항이 의무규정임을 고려할 때 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제정안은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방재시설의 사용·소유·점유·관리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를 “권리자”로 약칭하고 이 법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 인접 방재시설의 소유자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조항에서만 언급되므로 약칭의 적용 범위를 해당 조항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제5조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절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 수렴 제9조 :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제10조 : 의견 수렴(신설)	▸ 도시 개발 등 재해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 제시 ▸ 과거 피해이력 등에 대한 지역주민, 권리자 사전 의견 수렴 의무화

3.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2절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1조(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재해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등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등의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실시한 기관은 그에 대한 의견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의 요청 시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검토 의견과 그 의견의 반영 여부(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다)를 재해영향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려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은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허가등을 받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요청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

안전부 장관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받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만을 실시하여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재해영향평가의 제거·감소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개발사업등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개발사업등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거나 보완·조정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의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보완·조정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해영향평가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사업등의 계획이 미흡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재해영향평가서가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 장관은 해당 개발사업등의 추진으로 재해영향이 현저하게 증가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등을 재검토할 것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검토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등의 재검토 및 제6항에 따른 조정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협의 내용의 통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 통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와 연장한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협의 내용의 반영)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려면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이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이 재해영향평가서 및 개발사업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협의 내용의 조정)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21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등의 확정 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 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재해영향저감대책의 변경에 대한 이행계획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등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허가등이 실효되어 해당 개발사업등의 확정 또는 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개발사업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종전에 완료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로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사업등의 부지의 경계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사업등에 제16조에 따라 통보받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②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재해영향저감대책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 제2장제2절(제11조부터 제21조까지)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안 제11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안 제12조 및 제13조),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시 협의 갈음 특례(안 제14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및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 등 검토(안 15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통보 및 그 내용의 반영(안 제16조 및 제17조),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조정(안 제18조),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등의 변경 시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안 제19조), 개발사업등의 허가 실효 후 재

확정 및 재허가 필요 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갈음하는 특례(안 제20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1조)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안 제18조)을 제외한 다른 조문의 경우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한 것으로 보임.

제정안이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협의 내용의 조정’(안 제18조)은 「환경영향평가법」의 협의 내용 조정 요청에 관한 규정⁸⁾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통보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이 개발사업등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봄.

다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21조)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협의회의(안 제7조)와 구성이 유사하여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나의 기구로 통합

8)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조정 요청 등) ①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제4조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2절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11조 : 재해영향평가서의 사전검토 제12조 :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제13조 :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사전검토 수행기관 및 절차 명시 - 행정계획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 행 의무 및 방법 구체화 -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 행 의무 및 방법 구체화
제4조의2 :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에 따른 특례	제14조 :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 동시 수립 시 행정계획 수립 협의 생략
제4조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제15조 :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16조 : 협의 내용의 통보	- 행안부장관의 평가서 검토, 보완· 조정 등 검토에 관한 사항 제시 - 협의 요청 시 협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제6조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 용의 이행 -	제17조 : 협의 내용의 반영 제18조 : 협의 내용의 조정(신설)	- 통보 받은 협의 내용의 반영에 관한 사항 -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제5조의2 : 재해영 향평가등의 재협의	제19조 :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규모 등 제시
제4조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제20조 :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특례 제21조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구성·운영	- 협의 완료된 개발사업 취소 시 종전 협의 같음 조건 제시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검토 항목, 위원회 임기 등

4.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안 제22부터 제37조까지)

제정안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3절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제22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등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제20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재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통보받고 개발사업등을 시행할 때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사업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사업등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시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재해영향평가 교육 실시 및 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의무를 승계한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협약 내용의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①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 사본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협약 이행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착공 통보를 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이하 “점검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제30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 내용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대상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약 내용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행실태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 사업장에 대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이행실태점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개발사업이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 및 공사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또는 재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재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0조(협의 이행 결과의 제출 등)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준공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사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재해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시설(이하 “재해영향저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영향저감시설의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이행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사후관리보고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의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사후관리보고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해영향평가의 업무 대행 등) ①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재해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해영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이하 “재해영향평가대행자”라 한다)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를 비롯한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업무 대행 등록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재해영향평가를 하려는 자 또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다른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하여 재해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재해영향평가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해영향평가대행자와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5. 재해영향평가대행자와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재해영향 예측·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할 것

④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도급 받은 재해영향평가의 대행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4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재해영향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휴업한 사업의 재개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등록 요건 충족 여부 및 제32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의 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재해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4.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등록 후 2년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해영향평가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6.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8.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9. 제34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10.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연재해대책법」의 준용) 재해영향평가등의 업무의 대행 및 재해영향평가대행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재관리대책 업무”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로 보며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재해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제정안 제2장제3절(제22조부터 제37조까지)은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및 제23조), 사업 착공 등의 통보(안 제24조), 이행의무의 승계(안 제25조),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점검, 조치 명령 등(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협의 절차 종료 전 사전허가 및 공사 금지(안 제29조), 준공검사 시 협의 이행 결과의 제출(안 제30조), 준공검사 후 재해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31조), 재해영향평가의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안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협의 이행실태 점검(안 제27조)과 재해영향저감시설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31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이관하면서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구체화한 것임.

첫째, 제정안이 기존 재해영향평가 제도에서 추가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사업의 착공 통보를 한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행실태 점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7조), 준공검사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재해영향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사후관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운영실태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안 제31조)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개발사업의 착공 시부터 준공 이후까지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협의 내용 이행 미흡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사업장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공무원과 사업시행자등의 마찰을 방지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

편, 조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은 신분 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업장의 출입·조사에 관한 유사 입법례]

「관세법」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 ① 관세청장은 제240조의2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자료제출·점검 또는 조사를 할 때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및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둘째, 제정안은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게 하면서, 대행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재해대책법」상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수행하던 업무 중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임.

제정안에 따를 경우 자연재해와 관련한 대행업무 체계가 이원화되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혼선을 주게 될 우려가 있고, 기존에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한 대행업무를 수행하던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새로 재해영향평가대행업 등록을 하여야 하게 되는 행정상 비효율이 초래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부칙에 법률 제정 후에도 그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추가적으로, 정부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중 하나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가 30일 이내의 단기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휴업 및 사업 재개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468호)을 제출하여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바탕으로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휴업 및 사업 재개 신고 의무 면제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제6조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 용의 이행 제6조의2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6조의3 : 재해영향 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제6조의4 : 재해영 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제6조의5 : 재해영 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7조 :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제6조의4 : 재해영 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 제38조 : 방재관리 대책 업무의 대행 제39조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제41조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41조의2 : 대행 자 실태 점검 제42조 :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제2장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등 제3절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및 의견수렴 제22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제23조 :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제24조 : 사업 착공 등의 통보 제25조 :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제26조 : 협의 내용에 대한 관리· 감독 제27조 : 협의 이행실태 점검(신설) 제28조 :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제29조 :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 및 공사의 금지 제30조 : 협의 이행 결과의 제출 등 제31조 : 사후관리(신설) 제32조 : 재해영향평가의 업무 대 행 등 제33조 :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결 격사유 제34조 :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제35조 :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실태 점검 제36조 :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7조 : 「자대법」의 준용(신설)	• 협의 결과의 이행 의무 및 방법 제시 • 관리책임자 지정·통보 및 교육 이수 의무화 • 착공, 3개월 이상 공사 중지 시 관계기관에게 통보 • 시행자 변경 시 협의 결과 이행 의무 승계 명시 • 점검 권한 점검단 구성 및 점검항목 등 규정 • 협의 내용 미이행 시 공사중지 등 명령 규정 • 협의 완료 이전 개발사업 사전허 가 금지 규정 • 준공검사 시 협의 내용 이행 결과 제출 • 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등 사 후관리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업무 대행자의 자격 요건 및 지 켜야 할 의무 명시 • 업무 대행자의 결격사유 명시 • 업무 대행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시 절차 명시 • 업무 대행자의 업무 운영 실태 점검 근거 마련 • 업무 대행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 업무 대행 관련 「자대법」 준용 사항 명시

5.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제 정 안

제3장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제38조(재해영향평가사) ① 재해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별도로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0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재해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재해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이 응시일로부터 3년간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⑧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재해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재해영향평가사는 재해영향평가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해영향평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3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재해 현황 조사, 재해영향 예측·분석, 재해영향 제거 또는 감소 대책 및 대안의 평가 등을 통하여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인 재해영향평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에 관한 규정⁹⁾

9)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환경영향평가사) ① 환경영향평가사가 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6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삭제 <2016. 5. 29.>

④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사람은 환경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삭제 <2016. 5. 29.>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① 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③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	제3장 재해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	제38조 : 재해영향평가사(신설)	▸ 재해영향평가사 자격 등 규정
-	제39조 : 재해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신설)	▸ 재해영향평가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제40조 : 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신설)	▸ 재해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명시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보칙 및 벌칙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제 정 안

제4장 보칙

제41조(재해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비밀 유지의 의무) 재해영향평가대행자, 재해영향평가사, 재해영향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이하 “운영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재해영향평가대행자의 수주 실적 및 입찰 실적에 관한 사항
3. 재해영향평가대행자가 보유한 재해영향평가사 등 기술인력의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재해영향평가협회) ① 재해영향평가대행자 및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조사·교육·홍보와 그 밖에 재해영향평가와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나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등

제4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 (제20조에 따른 재협의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협의를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공사를 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6.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재해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자
7.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이행계획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5. 제24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준공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해영향평가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정안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안 제41조),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42조),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43조), 재해영향평가협회(안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안 제46조)의 보칙과, 벌칙(안 제47조), 양벌규정(안 제48조), 과태료(안 제49조)의 벌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보칙 중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과 벌칙 규정은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및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정안이 기존 「자연재해대책법」 규정과 다르게 새로 추가하고 있는 협의 위반 사실의 공표¹⁰⁾, 비밀 유지의 의무¹¹⁾, 운영지원시스템 구축·운영¹²⁾, 재해영향평가협회¹³⁾에 관한 사항은 각각 「환경영향평가

10)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의2(환경영향평가 협의 위반사실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대상 사업장의 명칭,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폐지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전공사를 한 경우
2. 제35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구체적인 기준·내용 및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1) 「환경영향평가법」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상의 해당 규정을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영향평가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조치로 판단됨.

-
- 12) 「환경영향평가법」 제70조(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기술을 향상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보급과 제53조제5항제3호 단서,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 제62조의4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5. 29.>
- ④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관리 및 제62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및 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13) 「환경영향평가법」 제71조(환경영향평가협회) 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와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된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바꾸어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제정안의 비교]

자연재해대책법	제정법	주요 내용
	제4장 보칙	
	제41조 : 재해영향평가 협의 위반 사실의 공표(신설)	▸ 협의 위반 시 위반행위, 처분 내용 등 공표 근거 마련
	제42조 : 비밀 유지의 의무(신설)	▸ 협의에 참여한 자의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명시
	제43조 : 재해영향평가 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신설)	▸ 제도의 효율적 운영, 업무 자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제44조 : 재해영향평가협회(신설)	▸ 재해영향평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발전을 위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76조 : 권한의 위임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협의 권한 일부를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위임·위탁 근거 마련
제76조의2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6조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적용
	제5장 벌칙 등	
제77조 : 벌칙	제47조 : 벌칙	▸ 공사중지 명령 불이행, 협의 미 실시 등에 관한 벌칙 사항 명시
제78조 : 양벌규정	제48조 : 양벌규정	▸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 시 해당 법인에도 부과
제79조 : 과태료	제49조 : 과태료	▸ 관리책임자 미지정, 협의내용 관리 미흡 등 과태료

7. 부칙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제5호,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7조제1항·제2항제1호, 제7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의3제1호 중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중 “제4조, 제8조”를 “제8조”로 한다.

제정안은 법 제정으로 인한 기존 제도의 변화 및 재해영향평가사 등 신규 제도의 도입 등을 준비하기 위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을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삭제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해영향평가 제도에 관한 규정 중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 종료 전 개발사업 허가 금지, 방재 분야 전문가의 참여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자연재해대책법」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의 삭제 여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349